

# 건설현장 벌점 등 행정처분 사례집

2023. 5.

## 건설현장 벌점 등 행정처분 사례집



# 건설현장 벌점 등 행정처분 사례집



## I. 건설현장 벌점 등 행정처분 개요

- 1. 배경 05
- 2. 행정처분(벌점, 과태료) 06

## II. 주요 위반 사례 및 행정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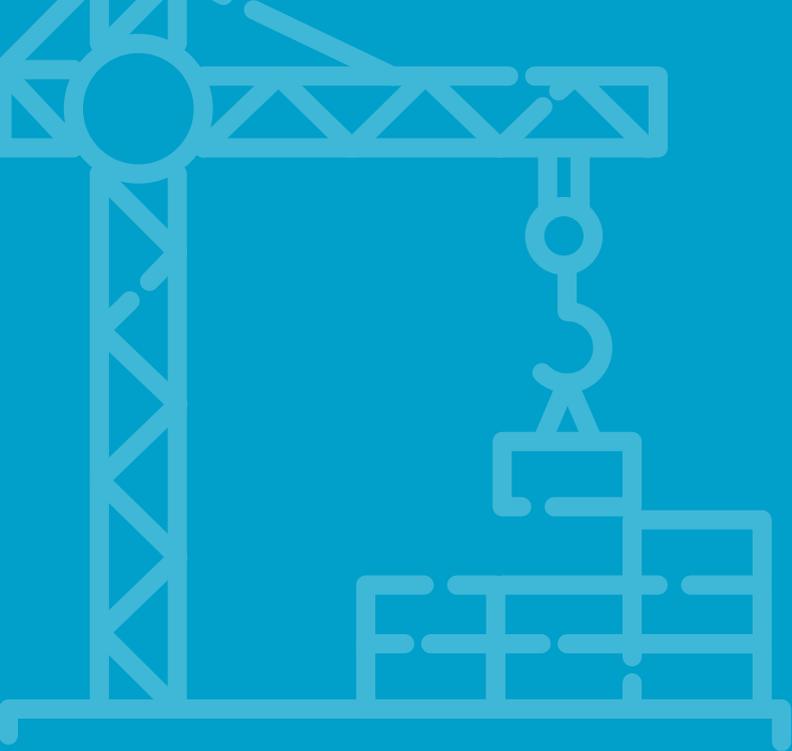
- 1. 품질분야 13
  - (1)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미수립
  - (2) 품질시험실 미설치 및 시험장비 미배치
  - (3) 레미콘 납품업체의 장비를 사용하여 품질시험 실시
  - (4) 품질관리자 미배치
  - (5) 품질관리자 타업무 겸직
  - (6) 품질관리(시험) 내용 미흡
  - (7) 품질관리자 교육 미이수
  - (8) 품질관리비 미계상
  - (9) 시험장비 검·교정 미실시
  - (10) 레미콘 생산·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 관리 미흡
  - (11) 건설용 자재 관리 상태 불량
- 2. 안전분야 37
  - (1) 안전관리계획서 미수립
  - (2) 안전관리계획서 미승인
  - (3)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 (4)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소홀
  - (5) 가설구조물 설치상태 불량
  - (6) 안전관리비 미계상
  - (7)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제출 소홀
  - (8)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소홀
  - (9) 안전관리계획 내용 미흡
- 3. 시공분야 57
  - (1) 토공사 부실
  - (2) 콘크리트 균열 발생
  - (3) 콘크리트 철근노출·재료분리 발생
  - (4) 배수상태 불량
  - (5) 방수불량에 따른 누수 발생
  - (6)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 (7)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II



---

본 사례집은 관련 법령, 지침, 기준 등을 토대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며,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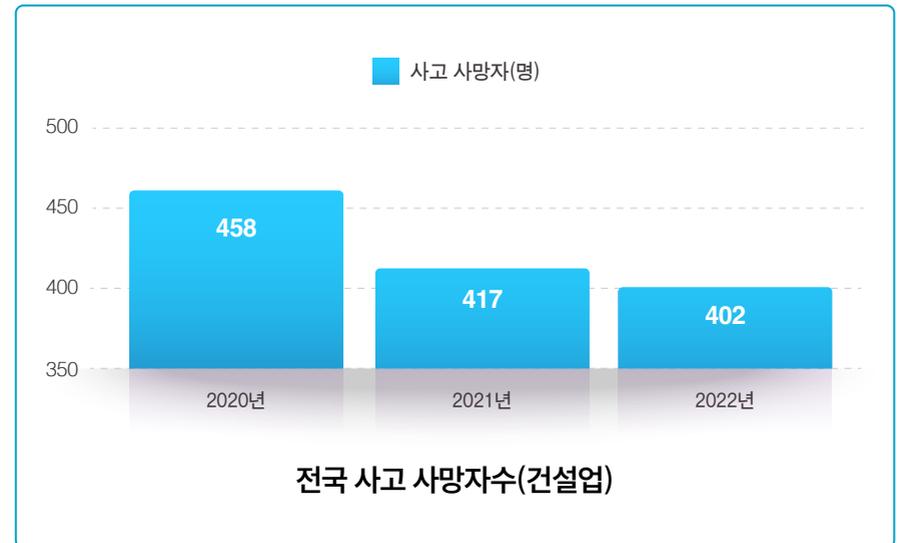
# 제 I 장

## 건설현장 벌점 등 행정처분 개요

### 1. 배경 및 필요성

-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 및 사고방지를 위하여 건설현장 점검 확대 등 노력하고 있으나, 건설사고는 지속 발생(광주아파트 붕괴 등)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불안 지속

※ 전국 건설업 사고 사망자수 : ('20년) 458명 → ('21년) 417명 → ('22년) 402명



-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23.1.1.)으로 부실벌점 제도가 강화(벌점산정시, 당초 평균방식 → 변경 합산방식)되었으며, 건설업계에서는 부실벌점에 따른 불이익(입찰 시 불이익, 분양 제한 등)에 매우 민감
- 이에 따라 부실벌점,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함으로써, 건설업계가 행정처분 사례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 유도

## 2. 행정처분

### (1) 부실벌점

####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87조의2(이의 신청 등), 제87조의3(벌점심의위원회) 및 [별표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 벌점 부과기관(측정기관)

- 국토교통부장관(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
-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

#### ■ 벌점 부과대상자

-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와 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부과 방법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
- (분담이행방식) 분담업체별로 부과

- 준공된 건설공사도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가 가능하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항사목에 따른 “벌점부과기한”에 따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항사목 : 측정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부과

### ■ 벌점제도 절차



**부실 측정**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벌점통지 및 이의신청심의**  
(측정기관 = 벌점대상자)

- **측정대상 :**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 **측정일시 :** 매반기 말까지 측정
- **부과대상 :**
  - ① 건설사업자, ② 주택건설등록업자,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 포함), ④ 1~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 업체와 건설기술인에게 양별 부과 원칙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 **벌점통지 :**  
벌점책정결과를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 \* 이의신청 미 제출 시 벌점 확정 통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 및 제87조의2

- **벌점심의 위원회개최 :**  
부과대상자로부터 이의신청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위원장 및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이의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의3,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벌점에 따른 불이익 적용 관련 규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합산 벌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미만	0.2
2점 이상 5점미만	0.5
5점 이상 10점미만	1
10점 이상 15점미만	2
15점 이상 20점미만	3
20점 이상	5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벌점	제재기간
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개월
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4개월
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6개월
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8개월
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1년
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2년

- 시공능력 평가금액 산정시 벌점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의 3% 범위 안에서 감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 아파트 선 분양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표4])

합산벌점	입주자모집시기	
	아파트	연립·다세대
10.0 이상	사용검사후	사용검사후
10.0 미만 7.0 이상	전체 동(옥탑층을 포함한다)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7.0 미만 5.0 이상	전체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5.0 미만 3.0 이상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 벌점 불이익 적용기간

-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
  - 예1 2021 상반기 부과된 벌점은 2021.9.1부터 2023.8월 말까지 적용
  - 예2 2021 하반기 부과된 벌점은 2022.3.1부터 2024.2월 말까지 적용

(2) 과태료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제91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별표20] 및 [별표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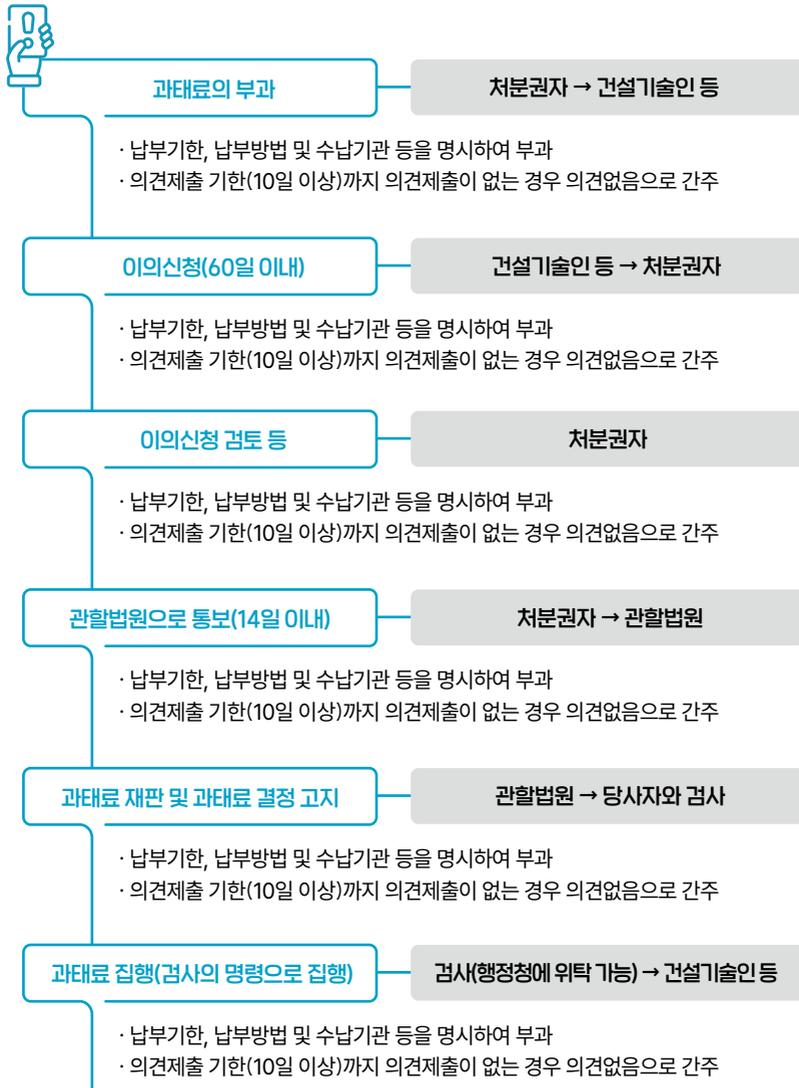
■ 과태료 부과대상자

-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와 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

■ 과태료 부과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시·도지사
  -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같은 법 제9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한정)

■ 과태료 처리절차



■ 과태료 감경·가중 기준

• 감경기준

감경사유	감경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	1/4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표20]
당해 위반행위가 단순한 경과실로 인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건수가 2건 이하인 때	1/4	
의견진술 기간에 자진 납부하는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부과될 과태료의 1/5	

• 가중기준

가중사유	감경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사유로 인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1/4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표20]
당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건수가 3건 이상인 때	1/4	



## 제 Ⅱ 장

### 주요 위반 사례 및 행정처분

2-1. 품질관리

2-2. 안전관리

2-3. 시공관리

# 1 | 품질 관리





## 품질관리 1.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미수립

### 공사개요

공사명 :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사종류 : 건축 / 민간  
 공사개요 : 12억원, 지상6층, 연면적 A=908.32㎡

### 위반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시험실 설치 및 시험·검사장비를 배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 처분내용

⊗ 건설사업자·건설기술인 ⇒ 벌점 3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벌칙)  
 4.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사)·건설기술인 ⇒ 벌점 3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나목. 7) 가) 3점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의 불철저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실·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품질관리 2. 품질시험실 미설치 및 시험장비 미배치

### 공사개요

공사명 : ○○일반사업단지 ○○공장 신축공사  
 공사종류 : 건축 / 민간  
 공사개요 : 111억원, 공장 6개동, 연면적 A=6,553.98㎡

### 위반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시험실 설치 및 시험·검사장비를 배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 처분내용

⊗ 건설사업자·건설기술인 ⇒ 벌점 3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가목. 13) 가) 3점  
 ○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사)·건설기술인 ⇒ 벌점 3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나목. 7) 가) 3점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의 불철저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실·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비고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 품질관리 3. 레미콘 납품업체의 장비를 사용하여 품질시험 실시

#### 공사개요

공사명 : ○○리조트 ○○ 신축공사  
 공사종류 : 건축 / 민간  
 공사개요 : 342억원, 지하2층~지상20층, 연면적 A=21,222.41㎡

#### 위반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라 레미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나, 레미콘 납품업체의 장비를 사용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경우  
 ⇒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명시된 시험장비와 다른 시험장비를 사용하였으므로, 품질관리(시험)계획과 다르게 실시한 경우에 해당  
 ⇒ 또한, 레미콘 납품업체는 품질검사 대행기관이 될 수 없음

#### 처분내용

⊗ 건설사업자·건설기술인 ⇒ 벌점 3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 가목. 12) 나) 1점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사)·건설기술인 ⇒ 벌점 1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나목. 8) 나) 1점  
 ○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 소홀  
 -주요 자재(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 현장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품질검사전문기관 현황) (주)건설품질시험원 등 179개사('21.1. 30.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국가기술표준원  
 4. 시·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5. 국방시설본부  
 6. 조달청 품질관리단  
 7. 지방해양수산청  
 8. 국립·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 품질관리 4. 품질관리자 미배치

#### 공사개요

공사명 : OO대 OO도서관 신축공사  
 공사종류 : 건축 / 공공  
 공사개요 : 106억원,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A=4,019㎡

#### 위반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시험실 설치 및 시험·검사장비를 배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 처분내용

⊗ 건설사업자·건설기술인 ⇒ 벌점 3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가목. 13) 가) 3점  
 ○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사)·건설기술인 ⇒ 벌점 3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나목. 7) 가) 3점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의 불철저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실·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비고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에 따른다.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 품질관리 5. 품질관리자 타업무 겸직

### 공사개요

공 사 명 : 국지도○○호 ○○-○○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종류 : 토목 / 공공  
 공사개요 : 710억원, 도로확포장 L=8.8km

### 위반내용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 처분내용

☞ 건설사업자·건설기술인 ⇨ 벌점 2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 가목. 13) 나) 2점  
 ○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 시험실·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미달한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사)·건설기술인 ⇨ 벌점 3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나목. 7) 나) 2점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의 불철저  
 -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험실·시험장비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했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 품질관리 6.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미흡

### 공사개요

공사명 : ○○○ D10-2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사종류 : 건축 / 민간  
 공사개요 : 13억원,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A=1,274㎡

### 위반내용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1]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9]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시행령 별표9의 시험시설(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등)]를 누락하는 등 관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보완이 필요한 경우

### 처분내용

☞ 건설사업자·건설기술인 ⇨ 벌점 2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가목. 12) 가) 2점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사)·건설기술인 ⇨ 벌점 3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나목. 7) 가) 3점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의 불철저  
 -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실·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별표9]

####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

1. 개요
  - 가. 공사명
  - 나. 시공자
  - 다.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 가. 공종
  - 나. 시험 종목
  - 다. 시험 계획수량
  - 라. 시험 빈도
  - 마. 시험 횟수
  -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 가. 장비명
  - 나. 규격
  - 다. 단위
  - 라. 수량
  -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 가. 성명
  - 나. 등급
  -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 라. 건설기술인 자격 및 학력·경력 사항
  - 마. 그 밖의 사항



## 품질관리 7. 품질관리자 교육 미이수

### 공사개요

공사명 : OO물류센터 신축공사  
 공사종류 : 건축 / 민간  
 공사개요 : 328억원, 지상4층, 연면적 A=24,683.35㎡

### 위반내용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 처분내용

☞ 건설사업자 ⇨ 벌점 1점 부과 / 건설기술인 ⇨ 300만원 이하 과태료(시·도지사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가목. 13) 다) 1점  
 ○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과태료)제3항  
 1.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사)·건설기술인 ⇨ 벌점 2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나목. 7) 가) 2점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의 불철저  
 -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험실·시험장비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했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별표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 2. 교육·훈련의 대상, 시간 및 이수시기

##### 가. 기본교육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나. 전문교육

#### 3)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품질관리기술인"이라 한다)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가) 최초교육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나) 계속교육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다) 승급교육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품질관리 8. 품질관리비 미계상

### 공사개요

공 사 명 : 〇〇〇 숙박시설 신축공사  
 공사종류 : 건축 / 민간  
 공사개요 : 324억원,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A=17,877.01㎡

### 위반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품질관리비)을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 처분내용

총 발주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국토청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과태료) 제2항  
 2.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영 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검사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품질관리 9. 시험장비 검·교정 미 실시

### 공사개요

공사명 : ○○계곡 진입도로확장공사(2공구)  
 공사종류 : 토목 / 공공  
 공사개요 : 7억원, 도로확장 L=465.8m

### 위반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고장 방지, 검·교정 등)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 처분내용

⊗ 건설사업자·건설기술인 ⇒ 벌점 0.5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가목. 13) 라) 0.5점  
 ○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사)·건설기술인 ⇒ 벌점 0.5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나목. 7) 라) 0.5점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의 불철저  
 - 시험장비의 고장(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 품질관리 10. 레미콘 생산·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 관리 미흡

### 공사개요

공 사 명 : 양양 OO리조트 증축공사  
 공사종류 : 건축 / 민간  
 공사개요 : 396억원, 지하1층~지상10층, 연면적 A=13,599㎡

### 위반내용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 2022)에 따라 콘크리트의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C 이상일 때는 1.5시간, 25°C 미만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레미콘 도착시간과 타설완료시간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 처분내용

⊗ 건설사업자·건설기술인 ⇨ 벌점 1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가목. 15) 나) 1점  
 ○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슬럼프시험,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사)·건설기술인 ⇨ 벌점 1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나목. 8) 나) 1점  
 ○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 소홀  
 -주요 자재(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 현장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 관련법령

###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 2022)

#### 1. 일반사항

##### 1.10 공사기록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 3. 시공

##### 3.2 운반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C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C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 품질관리 11. 건설용 자재 관리 상태 불량

### 공사개요

공사명 : OO 초·중학교 신축공사  
 공사종류 : 건축 / 공공  
 공사개요 : 128억원,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A=14,176.83㎡

### 위반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8조에 따라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주요자재가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하여야 하나, 반입된 자재(철근)의 보관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 철근이 야외에 노출 시 부착기능 저하 방지를 위해 받침목 설치 및 방수기능이 있는 덮개로 보관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아 부식된 경우

### 처분내용

⊗ 건설사업자·건설기술인 ⇒ 벌점 1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 가목. 14) 다) 1점  
 ○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친 경우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사)·건설기술인 ⇒ 벌점 1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나목. 8) 나) 1점  
 ○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 소홀  
 -주요 자재(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 현장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제58조(사용자재의 검수·관리)

-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철근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11: 2022)

## 2. 자재

###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방수기능이 있는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 제 Ⅱ 장

### 주요 위반 사례 및 행정처분

2-1. 품질관리

2-2. 안전관리

2-3. 시공관리

# 2 안전 관리



## 안전관리 1. 안전관리계획서 미수립

### 공사개요

공사명 : ○○군 상가주택 신축공사  
 공사종류 : 건축 / 민간  
 공사개요 : 26억원, 지상5층, 연면적 A=999.28㎡

### 위반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건설사업자는 현장운영계획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나, 수립·제출하지 않은 경우

### 처분내용

⊗ 건설사업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고발)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벌칙)  
 7.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사)·건설기술인 ⇨ 벌점 3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나목. 4) 가) 3점  
 ○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지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제95조(안전관리)

-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 안전관리 2. 안전관리계획서 미승인

### 공사개요

공 사 명 : 속초 OO파크 OOO 신축공사  
 공사종류 : 건축 / 민간  
 공사개요 : 797억원, 지하2층~지상27층, 연면적 A=38,405.08㎡

### 위반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건설사업자는 현장운영계획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받지 않고 착공한 경우

### 처분내용

⊗ 건설사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고발)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벌칙)  
 5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사)·건설기술인 ⇨ 벌점 3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나목. 4) 가) 3점  
 ○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제95조(안전관리)

-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 안전관리 3. 정기안전점검 미 실시

#### 공사개요

공 사 명 : 지방도○○○호선 ○○지구 도로확포장공사  
 공사종류 : 토목 / 공공  
 공사개요 : 447억원, 지하4층~지상20층, 연면적 A=13,010㎡ A=21,222.41㎡

#### 위반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지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에서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처분내용

☞ 건설사업자·건설기술인 ⇨ 벌점 3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 가목. 11) 나) 3점  
 ○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사)·건설기술인 ⇨ 벌점 3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나목. 4) 나) 3점  
 ○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2. 정기안전점검 :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 ③ 초기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
- ④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 안전관리 4.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소홀

### 공사개요

공 사 명 : 원주 ○○○○ 신축공사  
 공사종류 : 건축 / 민간  
 공사개요 : 52억원, 연면적 A=6,544㎡

### 위반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나, 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 처분내용

⊗ 건설사업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고발)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벌칙)

8. 제62조 제1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사) · 건설기술인 ⇨ 벌점 2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나목. 15) 나) 2점

○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소홀  
 -구조검토 절차를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⑩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②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2.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 안전관리 5. 가설구조물 설치상태 불량

### 공사개요

공사명 : ○○관광지탐방로(○○)조성사업  
 공사종류 : 토목 / 공공  
 공사개요 : 24억원

### 위반내용

당 공사는 높이가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 가설구조물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1항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을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지 않았으며, 또한 가설구조물(비계) 설치불량에 따라 안전난간 및 안전망 작업 중 작업자가 추락하는 건설사고(사망)가 발생한 경우

### 처분내용

☞ 건설사업자·건설기술인 ⇒ 벌점 3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가목. 10) 가) 3점  
 ○ 가설구조물 설치상태의 불량저  
 - 시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으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사) · 건설기술인 ⇒ 벌점 3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나목. 15) 나) 2점  
 ○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소홀  
 - 구조검토 절차를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⑩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②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2.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 안전관리 6. 안전관리비 미계상

### 공사개요

공 사 명 :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사종류 : 건축 / 민간  
 공사개요 : 42억원,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A=2,898㎡

### 위반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 처분내용

⊗ 발주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국토청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과태료) 제2항

4.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제63조(안전관리비용)

-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60조(안전관리비)

-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영 비용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비용

### 안전관리 7.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제출 소홀

#### 공사개요

공 사 명 : 국도○○호선 도로건설공사  
공사종류 : 토목 / 공공  
공사개요 : 459억원, 도로건설 L=13.1km

#### 위반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안전 점검기관으로부터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사업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 처분내용

용 건설사업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시·도지사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과태료) 제3항  
14. 제62조제3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안전관리 8.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소홀

### 공사개요

공사명 : ○○천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공사종류 : 토목 / 공공  
 공사개요 : 82억원, 교량 3개소 설치

### 위반내용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 처분내용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국토청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과태료) 제3항  
 14. 제62조제3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⑦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안전관리 9. 안전관리계획 내용 미흡

### 공사개요

공사명 : OO OOO지역 주택조합 부지조성공사  
 공사종류 : 토목 / 민간  
 공사개요 : 63억원, 부지조성공사 1식

### 위반내용

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규정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내용(피해방지대책 등)을 누락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처분내용

⊗ 건설사업자·건설기술인 ⇒ 벌점 2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 가목. 11) 다) 2점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사)·건설기술인 ⇒ 벌점 3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나목. 4) 가) 3점

-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①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9. 6. 25.>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종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으로 정한다.



## 제 II 장

### 주요 위반 사례 및 행정처분

- 2-1. 품질관리
- 2-2. 안전관리
- 2-3. 시공관리

## 3 시공 관리



## 시공관리 1. 토공사 부실

### 공사개요

공 사 명 : 양양 OO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공사종류 : 건축 / 민간  
 공사개요 : 513억원, 지하6층~지상20층, 연면적 A=29,990㎡

### 위반내용

본 공사의 건설사업자는 현장 주변의 침하 및 인접건물의 균열 등을 관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지만, 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 미흡으로 CIP 및 차수공법 실시구간에 지반침하 및 지하수 유출이 발생한 경우

### 처분내용

☹ 건설사업자·건설기술인 ⇒ 벌점 1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 가목. 1) 다) 1점  
 ○ 토공사의 부실  
 - 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 사진대지

## 지반침하 및 지하수유출



## 시공관리 2. 콘크리트 균열 발생

### 공사개요

공 사 명 : 국도○○호선 ○○교 개설공사  
 공사종류 : 건축 / 민간  
 공사개요 : 257억원, 교량개설 L=000m

### 위반내용

교량 바닥판에서 최대 균열폭 0.24mm의 균열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건설사업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서 바닥판에 대해 균열 발생 여부 등을 전수검사 하지 않았고 공인시험기관 시험 미의뢰, 균열관리대장 미기록 등 균열관리가 미흡한 경우

### 처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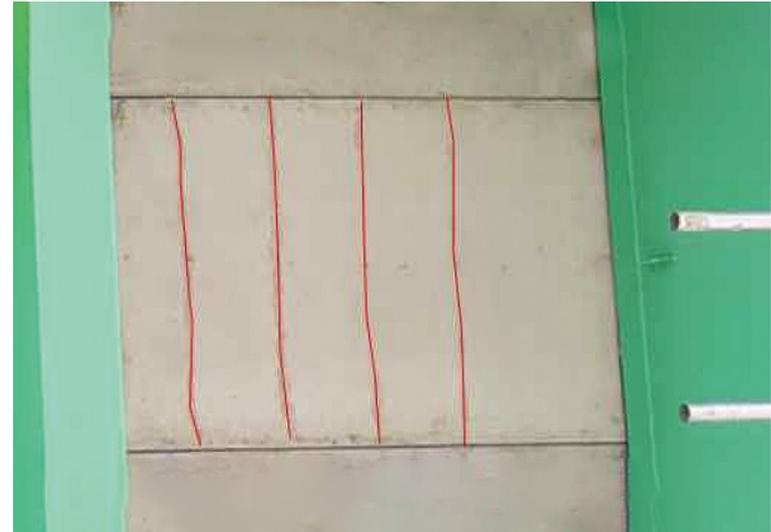
용 건설사업자·건설기술인 ⇒ 벌점 1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가목. 2) 다) 1점

-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진대지

### 바닥판 균열 및 누수



### 시공관리 3. 콘크리트 철근노출·재료분리 발생

#### 공사개요

공사명 : ○○ ○○요양병원 건립공사  
 공사종류 : 건축 / 공공  
 공사개요 : 241억원,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A=10,515㎡

#### 위반내용

콘크리트 공사 시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설 및 다짐을 철저히 하고 재료분리 발생 시에는 위치를 파악하여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계단실, 벽체 등 주요구조부에 재료분리가 발생하여 철근이 노출된 상태이며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 처분내용

⊘ 건설사업자·건설기술인 ⇨ 벌점 3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 가목. 3) 가) 3점

-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보강(철근노출 또는 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사)·건설기술인 ⇨ 벌점 2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나목. 2) 다) 2점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 사진대지

### 철근노출 및 재료분리



### 시공관리 4. 배수시설 불량

#### 공사개요

공 사 명 : 횡성 0000 단구간 확장공사  
 공사종류 : 토목 / 공공  
 공사개요 : 109억원, 도로확장 L=1.5km, B=18.5m

#### 위반내용

현장 내 비탈면구간 배수시설을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였으나, 현지여건 상 배수불량에 따른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배수시설 설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처분내용

⊕ 건설사업자·건설기술인 ⇒ 벌점 0.5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 가목. 6) 나) 0.5점  
 ○ 배수상태의 불량  
 - 배수시설의 관리 불량으로 인해 침수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사)·건설기술인 ⇒ 벌점 1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나목. 2) 다) 1점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 그 밖의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사진대지

### 배수시설 길이 부족



### 시공관리 5. 방수불량에 따른 누수 발생

#### 공사개요

공 사 명 : OO그룹 속초 OOOO 신축사업  
 공사종류 : 건축 / 민간  
 공사개요 : 2,548억원, 지하2층~지상26층, 연면적 A=120,500㎡

#### 위반내용

지하2층 CIP합벽구간 벽체에 누수 및 일부 균열·백태 현상이 발생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처분내용

☞ 건설사업자·건설기술인 ⇒ 벌점 2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 가목. 6) 나) 1점  
 ○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사)·건설기술인 ⇒ 벌점 2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나목. 1) 나) 2점  
 ○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 사진대지

### 합벽구간 누수



## 시공관리 6.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I

### 공사개요

공사명 : 동해시 OO지구 OOOOOO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종류 : 건축 / 민간  
 공사개요 : 786억원, 지하1층~지상19층, 연면적 A=70,409㎡

### 위반내용

골조공사 중 벽체 철근조립을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벽체철근 개수 부족 ⇒ 설계(12개), 시공(10개)  
 -철근 수평간격 미 확보 ⇒ 설계(120mm), 시공(20mm)

### 처분내용

☞ 건설사업자·건설기술인 ⇒ 벌점 2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 가목. 18) 나) 2점  
 ○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사)·건설기술인 ⇒ 벌점 2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나목. 1) 나) 2점  
 ○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보강(경미한 보수·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 사진대지

### 철근 개수 부족 및 철근 간격 미확보



## 시공관리 7.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II

### 공사개요

공사명 : ○○○○ 차단숲 조성사업  
 공사종류 : 토목 / 공공  
 공사개요 : 46억원, 숲 조성 A=59,417㎡

### 위반내용

설계도서 상에는 비다짐 토사 매립구간에 터파기 경사각이 1:1로 설계되어 있으나, 터파기 경사를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채 작업 중 토사가 유실된 경우

### 처분내용

○ 건설사업자·건설기술인 ⇨ 벌점 1점 부과  
 ○ 처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가목. 18) 다) 1점

○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사진대지

## 터파기 경사각 미확보



